

「구미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권고에 따라 안전 발생 시 위원회를 구성하는 비상설 운영 체제로 전환하여,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내실 있는 안전관리 민관협력 체계를 확립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협력위원회의 비상설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나. 비상설 전환에 따른 기능, 운영 등 규정 정비(안 제2조, 제4조~제8조)
- 다. 용어 및 문구 정비(안 제2조, 제8조, 제9조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감사담당관, 정책기획과와 합의되었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행안부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을 반영하여, 위원회 구성 이후 개최 실적이 없던 구미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안전 중심의 비상설 체제로 전환하고자 제출된 것으로

○ 검토 결과,

- 상위법령인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서 지역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자치입법권의 범위 내에서 개정 취지와 필요성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됨.
- 주요 개정 사항인 위원회 비상설화(안 제3조)와 위원 임기 조정(안 제5조)은 그동안 실질적인 예방·대응 활동을 수행하지 못했던 민관협력위원회의 실무적 한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식물위원회 양산을 방지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며
- 위원장 직무대행 방식을 ‘출석 위원 중 호선’으로 변경한(안 제6조) 것은 비상설 체제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긴급 소집 및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
- 다만 위원회가 비상설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재난 발생 시 위원회 구성과 소집이 지연되지 않도록, 집행기관에서는 민간 전문가 인력풀을 평상시 철저히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현행화하는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가동해야 할 것임.